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김수린 | 연구위원
slkim@krei.re.kr

이승준 | 연구위원
leeseungjunv@krei.re.kr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KEY MESSAGE

☑ 농촌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추진이 정책 실효성의 관건

SUMMARY

- 최근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의 생활 여건과 서비스 공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논의와 준비는 여전히 미흡함.
- 이에 농촌에서는 읍·면과 마을을 연계한 전달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지역자원 활용 강화를 통해 농촌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차등적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순환체계 마련, 지역 컨설팅 내실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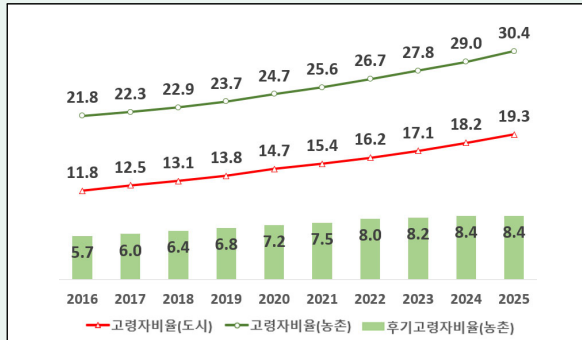
01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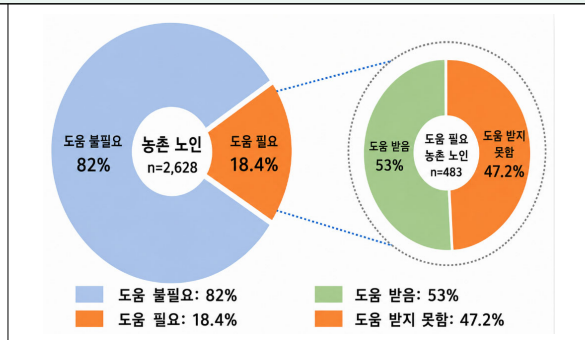
농촌의 돌봄 수요 증가, 그러나 대응은 부족

- 2025년 기준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30.4%,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8.4% 수준
 - 2024년 우리나라 인구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그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파른 농촌(읍·면)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30.4%에 달함(도시 19.3%). 그중에서도 돌봄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비율은 8.4% (읍 5.6%, 면 11.5%)로 나타남<그림 1>. 반면 같은 시기 도시(동)의 후기 고령자는 4.2% 수준임.
-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는 농촌 노인(18.4%) 중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7.2%에 달해
 - 이 같은 농촌의 빠른 고령화는 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짐.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 노인의 비율은 2020년 12.6%에서 2023년 18.4%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들 중 필요한 도움을 공공·민간 등 어떠한 경로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47.2%에 달함<그림 2>.¹⁾ 이는 농촌 노인의 돌봄 공백 문제가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함.

<그림 1> 고령화 추이



<그림 2> 농촌 노인의 도움 필요 및 제공 여부



주 1) 2025년 기준 전국 평균 고령자 비율은 21.2%임.

2) 고령자 비율=(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후기고령자 비율=(80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자료: (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우)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이와 같은 상황은 농촌에서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과 무관치 않아
 - 농촌은 낮은 인구 밀도와 장거리 이동, 열악한 교통 여건,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시설·인력) 등이 맞물려, 돌봄을 비롯한 각종 필수적인 서비스 접근성이 도시보다 취약함. 특히 노인은 신체기능 저하와 이동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움.

- 더욱이 독거 노인가구 비율이 높은 농촌은 가족 돌봄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도 어려운 구조임.²⁾ 또한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필수 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은 읍부보다 면부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그 격차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음.³⁾

최근 본격 추진 중인 통합돌봄, 도시와는 다른 농촌지역의 여건에 대한 고려는 미흡

I 2026년 3월부터 전국 단위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시행 중

- 기존에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요양·주거 등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그 결과, 서비스 체감도와 효율성은 떨어지고 개인 맞춤형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유발해 사회적 비용 확대를 초래함.⁴⁾
-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중심으로 시범사업(1차 '19~'22, 2차 '23~'25)을 추진 하였음. 청양군과 순천시에서 보건의료·요양 서비스 연계와 재가 중심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이 시범 운영되었으나,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 사업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후 2024년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동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그림 3>.

<표 1>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노인)

보건의료	방문진료, 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서비스, 만성질환관리
건강관리	보건소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장기요양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재택의료
일상생활돌봄	긴급돌봄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 중간집 등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주: 추후 도입 서비스로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복약지도, 방문영양, 방문재활, 병원동행, 스마트홈돌봄 등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3. 27.),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 돌봄을-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보건복지부(2020), 2020 노인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2023), 2023 노인실태조사.

2) 김수린·한이철·정학성·김문정·전용호(2023),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4) 최인덕(2022)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입원 비율을 적용하여 사회적 입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8,169억~1조 3,390억 원, 일반병원에서 1조 8,809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최인덕, 2022, 사회적 입원 개념 고찰과 비용 추계). 최근에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이로운넷 기사,

〈그림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3. 27.),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 돌봄을-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 통합돌봄의 절차는 ‘신청(읍면동/건강보험공단) → 조사·종합판정(건강보험공단+지자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시군구 총괄 통합지원회의) → 의료·요양·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링(읍·면·동, 3개월 주기)’으로 이루어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 및 대상자 발굴을 담당하고, 시·군·구 전담 부서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종합판정조사, 통합지원판정서 작성을 수행하는 체계로, ⁵⁾ 사업 운영 전반에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
- 동 사업은 ‘도입(‘26~’27)-안정(‘28~’29)-고도화(‘30~)’의 3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점진적인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와 신규 서비스 개발, 운영 기반 구축과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표 2>.

〈표 2〉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구분	1단계(‘26~’27)	2단계(‘28~’29)	3단계(‘30~)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돌봄 틀 마련 서비스 연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서비스 확대 지역 간 격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많은 국민 더 개선된 서비스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로 확대 의료 필요도 높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확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서비스 맞춤형 연계 신규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성과 분석 및 평가 신규 서비스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지원체계 완성
제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체계 혁신

자료: 보건복지부(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자료 연구진 재구성.

I 지역 기반 통합돌봄을 강조하는 만큼, 서비스 여건이 취약하기 쉬운 농촌지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존재

- 이 같은 통합돌봄 체계는 지역 중심 전달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 기반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음**. 특히,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가 중장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은 통합돌봄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초기 단계부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실제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가운데 돌봄서비스 확충에 활용 가능한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 물론 이는 지자체 특화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 연계 대상인 기존 국가 단위 서비스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정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농촌은 기존 서비스 공급 기반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현재 수준의 예산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향후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부담은 더욱 클 수 있음.
- 또한 **농촌의 생활 여건과 생활밀착형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 설계도 한계로 지적됨**. 특히 사업 집행이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접근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농촌의 여건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
- 농촌지역의 **중요한 돌봄 자원인 주민의 참여가 법령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역시, 농촌에 보다 적합한 통합돌봄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줌.
- 그러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의 추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에서 주민의 지속 거주와 지역사회 유지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이에 본 고에서는 도시와는 다른 여건을 지닌 농촌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음.

02 농촌 맞춤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과제



농촌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I 읍·면과 마을을 연계한 농촌형 전달체계 구축 필요

- 현행 통합돌봄 체계는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농촌은 읍 소재지와 외곽 면 지역 간 접근성 차이가 크고, 동일 시·군 내에서도 의료·복지·돌봄 자원의 분포가 불균형한 경우가 상당함. 더욱이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가 읍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음.
- 이러한 여건에서는 시군구 단위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만으로는 마을 단위의 실제 돌봄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움. 특히 농촌에서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마을회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들이 이미 읍·면 또는 마을 단위의 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농촌형 통합돌봄은 이러한 기존 지역 거점을 연계하여, 주민이 익숙한 생활공간 안에서 상담·발굴·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즉, 단순히 시·군·구 차원의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읍·면 단위에서 돌봄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됨. 실제로 거창군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 여건에 대한 종합 검토, 서비스 간 중복·공백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나아가 농촌에서는 돌봄 수요와 생활 여건에 대한 정보가 마을 단위에서 축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통합지원회의 운영 과정에서도 읍·면 단위를 넘어 마을 단위 돌봄 주체(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 주민조직 및 활동가 등)가 보유한 정보와 의견이 대상자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I 인접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 및 광역 협력체계 강화 필요

- 농촌은 의료·복지·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인접 시·군에 위치한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은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구역을 넘는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농촌형 통합돌봄은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광역 단위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6년 4월부터 농어촌도사벽지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⁶⁾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향후에는 **단순한 서비스 공급 확대를 넘어, 농촌의 이동 여건과 서비스 공급 구조를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I 생활밀착형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 현재 통합돌봄 제도는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농촌 주민의 돌봄 수요는 보다 생활밀착적인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예컨대 고령 독거가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단순한 신체 돌봄뿐 아니라 이동지원, 장보기, 대형 세탁, 간단한 집수리, 쓰레기 처리 등 일상생활 유지 자체를 위한 지원 수요가 큼.
- 다만 통합돌봄의 주요 연계 사업은 기존 공적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의 생활밀착형 돌봄 수요를 충분히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일상생활돌봄 영역으로 분류된 서비스 역시 예외가 아님.
-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행 통합돌봄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민간 서비스나 가족 돌봄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 가능한 생활 지원 영역이 농촌에서는 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국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더욱이 먼 단위 외곽 마을에서는 식료품 구매나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활지원과 이동지원은 사실상 돌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음.
- 이에 향후 농촌형 통합돌봄은 **기존 공적 서비스를 넘어 주민의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특히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나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의 **가가호호 이동장터 등 농촌형 생활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제도권 돌봄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의 구축을 의미함.
- 아울러 농촌형 통합돌봄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즉, 단순히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넘어,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확장하여야 함.

6) 사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함. 이때,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농촌형 통합돌봄 운영 기반 마련

I 지역자원인 주민·공동체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필요

-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과거 가족과 이웃 중심으로 유지되던 비공식 돌봄망 역시 축소되는 추세임. 그럼에도 농촌에서는 주민 간 관계망과 공동체 기반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돌봄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 기반의 돌봄 체계를 어떻게 유지·활성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 현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생활권 단위의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및 지역주민 참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법·제도 안에서는 주민 참여의 방식이나 역할,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주민 참여가 원칙 수준에 머무른다면, 농촌 현장에서는 지역의 가용한 돌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행정 중심의 제한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농촌의 경우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수행하는 각종 생활 지원(안부 확인, 식사 제공, 간단한 심부름, 외출 동행 등)은 이미 중요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당 부분 비공식·자발적 활동에 의존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농식품부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 돌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시적 예산 지원과 제도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농촌형 통합돌봄은 주민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돌봄 생태계의 주요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⁷⁾ 이를 위해 주민과 공동체가 수행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이들의 역할과 연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양한 공급 주체와 비공식 돌봄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 역시 공공·민간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주민조직과 공동체 기반 서비스 등 지역맞춤형 돌봄 자원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공식 돌봄 자원과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러한 시도는 향후 농촌형 통합돌봄이 기존 주민조직과 통합돌봄 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 나아가 서비스 제공 중심 접근을 넘어 주민 간 돌봄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7) 최근에는 농식품부 지원으로 산청, 양평, 화성 등에서 농촌돌봄농장, 주민 등 지역 주체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돌봄 모델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통합돌봄의 협력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I 농촌형 통합돌봄을 뒷받침할 인력·재정·운영 기반 강화 필요

- 농촌은 낮은 인구 밀도와 장거리 이동, 부족한 서비스 공급기관 등으로 인해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도시보다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요구되는 지역임.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체계는 지역별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제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는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큼. 특히 전담조직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에서는 관련 조직 구축이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전담인력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첫해에 마련한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은 6개월 분량의 한시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이에 기간제 채용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방식의 행정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정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광역 단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 사례 관리와 기관 간 연계 조정, 서비스 공급 공백 등 실무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 농촌은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가 부족해,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비스 공급이 자동으로 확대되기 어려움. 특히 방문간호, 재활, 사례 관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서비스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민간기관 역시 수익성 문제로 농촌 진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 지원 기능 강화와 별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농촌형 통합돌봄은 농촌의 서비스 공급 여건과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형·방문형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촌지역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전문인력 순환체계 구축, 지역 컨설팅의 현장 지원 기능 강화 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재정지원을, 지자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조직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돌봄 수요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형 통합돌봄의 주요 협력 주체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농촌형 통합돌봄 추진의 정책적 시사점

I 통합돌봄 3단계 추진계획과 연계한 단계적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 최근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의 생활 여건과 서비스 공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논의와 준비는 여전히 미흡함.
- 이에 농촌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주민·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재정·인력 기반 확충이 필요함.
- 특히 이러한 과제는 정부가 제시한 **통합돌봄 3단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도입기(2026~2027년)에는 읍·면과 마을을 연계한 전달체계 구축, 주민참여 기반 조성, 지역자원 발굴과 함께 농촌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재정지원 체계와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과 주민조직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정기(2028~2029년)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와 인접 지자체 간 연계체계 구축, 전문인력 순환체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고도화기(2030년 이후)**에는 도입기와 안정기에 구축된 전달체계와 서비스 기반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지역자원과 공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농촌에 적합한 통합돌봄의 추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에서 **주민의 지속 거주와 지역사회 유지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따라서 향후 통합돌봄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감 수 이순미 연구위원 061-820-2386 kwnong@krei.re.kr
내용문의 김수린 연구위원 061-820-2036 slkim@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51호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6.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